

「임산부라면 누구나」
국민행복카드 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제도문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카드문의

카드 신청·발급 및 이용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2008.12.15. 시행)

주요 변경사항 2019년 1월 1일 시행예정

- 기존 임신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외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도 사용 가능

지원금 이용범위 확대

임산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한약첨약) 중 임신부 본인이 부담한 금액

1세 미만 영유아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비용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 2019년 1월 1일 이후 진료 건부터 적용

지원금 인상

일태아

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지원금 사용기간 연장

분만예정일(유·출산일)로부터

60일 > 1년

※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결제 방법

- 요양기관에서 1세 미만 영유아 진료 또는 임신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 진료비 수납 시 국민행복카드로 단말기의 할부 개월 란에 '지원금 승인코드'(38코드) 입력하여 승인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입력해준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이용하여 공단·카드사 홈페이지(어플) 또는 전화로 신청한 자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60만원 지원(다태아는 100만원)
※ 2019.1.1.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 2019.1.1. 전 신청자는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90만원) 지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 분만취약지: 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되며, 매년 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지원금 결제 ⇒ 포인트 차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결제 방법

- 요양기관에서 임신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또는 1세 미만 영유아 진료 후, 진료비 수납 시 단말기의 할부 개월 란에 '지원금 승인코드'(38코드)를 입력하여 지원금 승인

지원금 잔액 확인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 카드 영수증(전표) 하단의 지원금 이용액 및 잔액 확인 가능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정부서비스/정부서비스신청/건강·의료/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지원금 사용기간

- 임신 중 신청한 경우 :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 2019.1.1.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 2019.1.1. 전 신청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후 신청한 경우 :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출산(유·사산)일로부터 1년까지
※ 2019.1.1.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 2019.1.1. 전 신청자는 출산(유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카드만 발급받은 경우 지원금(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사용가능
☞ 지원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여지원금은 자동소멸 됨에 유의

지원범위

- **임산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한약첩약 등) 중 임산부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임신·출산 관련 진료 예시
· 산부인과분야 : 산전검사(초음파, 양수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진료
· 조산원 :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 한방분야 :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 그 밖의 진료분야 : 임신·출산 관련한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 **1세 미만 영유아**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 비용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 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지원금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1단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
2단계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지원금(바우처) 신청 후, 추가로 카드사(은행)의 유선 상담 후 카드 발급 가능
- 카드사(은행) 방문 : 지원금(바우처) 신청 및 카드 발급 신청 동시 가능
※ 전담접수처

카드사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접수처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센터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온라인 신청

- 1단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출산확인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
- 2단계 임산부가 직접 홈페이지(어플) 또는 전화로 지원금 및 카드 신청

바우처 신청	공단	BC카드	BC카드 회원사 은행	삼성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가능*	가능	불가	가능	가능
모바일 어플	가능	가능	불가	가능	가능
전화	가능	불가	일부가능**	가능	가능

* 공단 홈페이지 신청 : 임신·출산확인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입력하고 업로드 한 후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

** BC카드 회원사 중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만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 국민행복카드 안내 • 국민행복카드 종류

Q 1 국민행복카드는 무엇인가요?

A 1 ▶ 개념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구 고운맘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구 맘편한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기 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별 별도의 지정카드 발급	1장의 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에 복수의 바우처를 동시에 탑재
(예) 고운맘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맘편한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지원 희망e카드: 8대 사회서비스 지원	(지원바우처)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③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복지부) ④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복지부), ⑤ 에너지 바우처(에너지관리공단)

※ 바우처란 :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의료, 육아, 교육 등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 비용을 보조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말합니다.

▶ 발급대상

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바우처는 각 지원제도별 수혜자격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기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행복카드만 먼저 발급받은 경우, 각 제도별로 바우처 신청이 별도로 꼭 이루어져야 지원됩니다.)

Q 2 국민행복카드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2 ▶ 국민행복카드는 일반금융카드에 지원금 기능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일반금융카드로 사용하며, 지원금을 사용하시려면 요양기관에서 수납 시 단말기의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38코드)가 입력되어야 지원금으로 승인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 시,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성되며, 임산부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의 세 가지 종류로 발급이 됩니다. 신용불량자 및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일반금융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경우, 계좌 미연결인 전용카드로 발급받아 지원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결제계좌	해당은행 계좌 (또는 카드사 제휴은행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필요 없음 (신용불량자 등만 가능)

※ 체크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은행 계좌(삼성카드나 롯데카드의 경우 해당카드사에 제휴된 은행계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지원금 승인 방법 • 승인거절 시

Q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승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3 ▶ 지원금 승인코드인 38코드를 단말기의 할부 개월 란에 입력하시면 지원금이 승인됩니다. 지원금은 1일 사용한도(금액 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인수납기에서는 지원금 결제 불가

Q 4 지원금으로 결제 시 승인거절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4 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 카드만 발급 받았을 경우 지원금 사용이 안 됩니다.
- ② 대상자의 건강보험 자격 유효여부 확인 → 건강보험 자격상실(또는 급여정지)인 경우 공단 지사에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시면, 처리 다음날부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원금 승인코드(38코드) 입력여부 확인 →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의 잔고가 결제해야 할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승인이 거절됩니다.

(ex) 진료비 청구액 (30만원), 국민행복카드 잔여지원금 (20만원), 연결 계좌 잔고 (5만원)
→ 이 사례의 경우, 개인부담 10만원이나 잔고가 5만원밖에 없어 거절됨

※ 신용카드는 승인코드(38코드)를 미입력하거나, 지원금 잔액이 0원일 경우 지원금이 아닌 본인부담으로 결제됩니다.

- ④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확인(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변경 포함) → 해당 금융사 영업점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원장 변경신청(주민등록번호 변경신고)를 하셔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⑤ 그 외 지원금 잔액 여부, 요양기관과 카드사 간의 가맹점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방법

- 카드 영수증 하단의 지원금 이용액 및 잔액 확인
-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하여 확인
 - BC카드(1899-4651)
 - 삼성카드(1566-3336)
 - 롯데카드(1899-4282)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확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정부서비스
 - 정부서비스신청 → 건강·의료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가맹점 계약 여부 확인

-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하여 확인
- BC카드(1899-4651)
 - 삼성카드(1566-3336)
 - 롯데카드(1899-4282)



자주 묻는 질문 (Q&A)

• 할부결제 • 결제 취소 • 분실·사후 결제 • 5만원 미만 소액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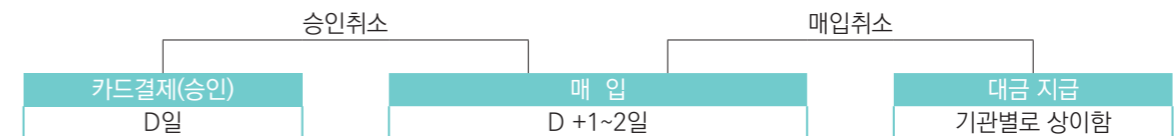
Q 5 진료비가 많아서, 할부로 결제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5 ▶ 지원금은 할부로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할부결제를 하려면 지원금으로 우선 결제한 뒤, 남은 본인부담금(국민행복카드 또는 타 카드)을 다시 할부로 결제하시면 됩니다.(총 2회 결제)
(예시) 진료비 80만원 청구시, 지원금으로 20만원 결제하고, 본인부담금 60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

구 분	총금액	1회 승인		2회 승인	
		지원금	본인부담	지원금	본인부담
카 드	800,000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or타카드		
금 액		200,000	600,000		
할부개월란		지원금승인코드	3(원하는 할부수)		

Q 6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결제를 잘못하여 지원금 취소하려고 하는데, 포인트는 언제 생성되나요?

A 6 ▶ 카드사의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결제 후 매입 전에 취소하는 경우를 '승인취소', 매입 후 취소하는 경우를 '매입취소'라고 합니다. '승인취소'의 경우 취소 즉시 지원금 포인트가 생성되나, '매입취소'의 경우 취소 후 2~3일 정도 후(=취소매입 후 익일)에 지원금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대금 지급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내용에 따라 상이함

Q 7 국민행복카드 미지참 및 분실인 경우, 바우처 사후 결제가 가능한가요?

A 7 ▶ 진료 시 국민행복카드 미지참 또는 카드훼손·분실 등의 사유로 바우처 결제를 못 하였을 시에는, 지원기간 종료전이라면, 사용시작일 이후의 진료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재결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요양기관의 결제시스템에 따라 수개월 경과한 경우 재결제가 불가할 수도 있으며, 사용시작일 이전의 진료 분에 대해서는 결제 불가합니다.

Q 8 진료비가 5만원 미만인데, 지원금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A 8 ▶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인 경우, 일부 단말기에서는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단말기 회사에 연락해서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신부 외래진료비 경감

- 임신 기간 산전 진찰 등 외래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경감
 - ※ 요양기관의 종별로 각 20%p 씩 인하
 - ※ 요양기관 방문 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임신부임을 확인
- 임신이 확인 된 이후 임신 유지 기간 및 유산·사산으로 인한 시술(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 적용 가능
 - ※ 보건기관,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적용 불가
 - ☞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의 본인부담률 발생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채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출생아(건강보험 자격유지자)로, 공단에 경감 신청한 경우, 조산아 등록일로부터 만 3세까지 외래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 적용
- 1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이용 시 본인부담 5% 적용
- (신청방법) 경감신청서(공단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게시), 출생증명서(출산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접수



1세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

- 2019.1.1.부터 시행
 - (현행) 본인부담률 21~42%(성인의 70%)
 - (개선) 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 10%, 의원 5%

국민행복카드를 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

- 본인명의로 카드 발급 후 반드시 임신부 본인이 보관하고 사용하십시오.
카드를 본인 이외 타인에게 양도·매매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자격 박탈 및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과 담합 등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 정지,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번없이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1577-1000